

의안번호	2214802
의 퇴 인	윤종오의원
회 답 일	2026.4.10.
추계번호	25B6551

건설안전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계자·시공자·감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 동안 7,000만원(연평균 1,4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정보 공개 등(지표개발) (안 제5조제2항)	70	-	-	-	-	70	14

주: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의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추산한 결과이므로, 향후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추계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 (정보 공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자·시공자·감리자(이하 “설계자등”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2	안 제8조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한 업무 수행 등)	발주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계자가 산정한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함. 이 경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된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관련한 검토를 완료한 것으로 봄.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설계자가 산정한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에 대해 시공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검토의견을 받아야 함(제2항) 1.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심의	의무규정
		2.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 허가, 승인, 신고 수리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	
		3. 안전자문사의 검토 의견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의 심의 또는 검토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설계자등에게 제공할 때에 반영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2개 이상의 업체에게 분리하여 발주할 경우 각각 총괄설계자와 총괄수급인을 지정하여야 함. 이 경우 지정된 자에게는 총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제6항)	의무규정
3	안 제10조 (안전자문사 선임)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이하 “안전자문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음(제1항)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의 건설기술인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기술인력을 보유한 자 2.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른 건축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자 3. 그 밖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나 경력을 보유한 자	재량규정
4	안 제23조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스마트 안전관리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5	안 제25조 (안전관리 수준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청, 인허가기관, 시공자, 설계자 및 감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6	안 제26조 (명예건설현장 안전감독관)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을 두어야 함(제1항)	의무규정
7	안 제31조 (건설사고 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8	안 제32조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이하 “중대건설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건설사고의 원인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8조에 따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공공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제4항)	
9	안 제33조 (건설종사자 재해보험·공제 가입 의무)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 중 소속 건설종사자가 업무상 재해(사망 또는 부상)를 입은 경우에 재해자(재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건설종사자 재해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인 건설사업자는 하수급시공자가 가입한 보험·공제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하수급시공자 소속 건설종사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장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발주자와 시공자인 건설사업자는 보험·공제에 가입한 건설사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함. 이 경우 발주자는 시공자와 하수급시공자의 보험료를 더한 금액의 2분의 1을 시공자에게 지급하고, 시공자는 하수급시공자의 보험료의 2분의 1을 하수급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10	안 제41조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의 확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도모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설안전과 관련된 법률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내부준법제도(이하 “건설안전 자율준수제도”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상황에 대하여 평가(이하 “건설안전 자율준수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안전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안전 자율준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설안전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의 공공기관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시 가산점을 줄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11	안 제42조 (건설안전 자율준수 평가기관의 지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안전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안전 자율준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건설안전 자율준수평가에 관한 업무(이하 “평가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 현행법과 제정안 재정수반조문 비교

- 제정안의 재정수반조문 중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과 중복되는 조문은 추계에서 제외하며, 현행 사업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2] 제정안과 현행법 비교 및 관련 사업현황

제정안 조문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사업현황
안 제5조제3항(정보 공개 등)	제62조제15항(정보공개)	•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 구축·운영(26년 예산: 1,887백만원)
안 제23조(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제62조의3(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 스마트안전장비 지원(26년 예산 3,056백만원)
안 제25조(안전관리 수준평가)	제62조제14항(안전관리 수준평가)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26년 예산: 300백만원)
안 제31조(건설사고 조사 등) 안 제32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제67조제3항~제6항(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제68조제1항(건설사고조사위원회)	• 재난대응 및 사고예방(사고조사위원회 운영)(26년 예산: 630백만원)

□ 제정안 재정수반조문별 추계 현황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5조제2항 (정보 공개 등)	○	• (추계) 국토교통부 내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
2	안 제8조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한 업무 수행 등)	×	• (제3호) 일정 규모 이상 공사에 대한 공사기간·공사비용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검토 절차가 추가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며, 분리발주 시 총괄설계자와 총괄수급인을 지정하여 총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경우 추가적인 공사비 증가요인이 발생하나, 향후 비용의 적정성 심의·검토 대상이 되는 공사의 범위가 대통령령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에 위임되어 있고, 공사비 반영 수준, 분리발주 공사의 규모와 건수 등이 확정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안 제26조 (명예건설현장 안전감독관)	×	• (제3호) 명예안전감독관의 위촉 인원 수, 현장별 배치 기준, 활동 수당의 단가 등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3	안 제33조 (건설종사자 재해보험·공제 가입 의무)	×	• (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발주할 건설공사와 해당 공사의 건설종사자 규모, 건설업체의 유형, 공제사업의 보상한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미비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산하기 곤란함 - 다만, 국토교통부가 2023년 건설실적을 바탕으로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종사자 재해보험공제 가입비용 중 50%를 지급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추산한 결과는 [참고자료]와 같음
4	안 제41조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의 확산) 안 제42조 (건설안전 자율준수 평가기관의 지정 등)	×	• (제3호)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안전 자율준수제도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건설안전 자율준수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포상·지원의 구체적 내용과 지급수준, 평가 신청 및 선정 건수, 지정기관의 수 및 운영비 지원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불확정적이므로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제정안 부칙과 사업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설계자·시공자·감리자(이하 “설계자등”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경우 소요비용을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산함
 - 안전관리 역량 확인을 위한 지표개발 계획안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추계가 곤란하나, 유사한 사업비를 참고하여 소요비용을 추산할 경우 평균 0.7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며, 추계기간 동안 1회 개발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3] 지표개발 관련 수립연구 연구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연구제목	발주처	수행시기	금액
안전문화 수준 측정지표 개발 및 진단분석 컨설팅 용역	한국철도공사	2025	48
TS 안전수준 측정지표 개발 용역	한국교통안전공단	2025	21
지역별 교통안전지표 조사 측정 용역	경찰청	2025	165
건설안전 지표 산정제도 개선방안 마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5	50
사고사례 분석에 기반한 공정안전 성과지표 개발 연구용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5	90
안전한국훈련 운영체계 및 평가지표 개선 연구용역	행정안전부	2025	45
평균			70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연구용역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일부추계) 이상의 가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계자등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 동안 7,000만원(연평균 1,4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4]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정보 공개 등(지표개발) (안 제5조제2항)	70	-	-	-	-	70	14

주: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의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추산한 결과이므로, 향후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추계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V. 부대의견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의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추산한 결과이므로, 향후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추계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정부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공사 시 건설종사자
재해보험·공제비용의 50%를 지원할 때 소요비용

국토교통부 추산자료

- 건설종사자 재해보험(공제)은 건설공사 수행 중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시 건설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발생한 피해보상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계약금액 중 노무비를 기초금액으로 하여 건설공사 사업 종류별 효율계수와 보상한도에 따른 효율계수 등을 적용함
- 하수급시공자의 건설종사자 재해보험(공제) 보장여력을 넘어서는 대형사고에 대비하여, 시공자인 건설사업자가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보험(공제) 보장 강화방안을 반영함
 - 노무비 산출은 통계청 최근 통계자료인 2023년도 공공부문 종합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의 공사계약 실적금액과 노동부장관 고시(제 2024-89호)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적용하고, 사업의 종류별 효율계수는 건축건설공사 효율계수를 적용함. 보상한도 효율계수는 손해보험업계에서 공통사용중인 1인당 보상한도 1.5억원(1사고당 20억원)에 해당하는 효율계수를 적용함
 - 조정계수는 손해보험업계에서 공통으로 적용하는 과거 손해율에 따른 공제 효율 조정을 반영한 것으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평균 조정계수를 산출하여 적용함
- 2025년 계약실적 추정은 2023년과 동일함을 전제로, 2026년 이후는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 연 2% 증가 적용
- 연도별 세부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음
통계청 최근 통계 “국내통계 - 건설교통물류 - 건설 - 종합건설업조사” 및 “국내통계 - 건설교통물류 - 건설 - 전문건설업 통계조사” 적용

[연도별 근로자재해보험(공제) 가입비용 및 발주자 지급비용 세부내역]

(단위: 원)

2027년	계약실적	노무비	요율계수	총가입비용	발주자 지급비용
종합건설업체	45,648,382,320,000	12,325,063,226,400	(사업종류) 0.083% (보상한도) 4.14	28,359,310,275	14,179,655,137
전문건설업체	33,608,561,400,000	9,436,443,606,000	(조정계수) 종합0.67, 전문0.78	25,295,229,146	12,647,614,573
합 계	—	—	—	53,654,539,421	26,827,269,710

자료: 국토교통부 추산자료

- 국내 건설공사 중 공공부문 발주자가 건설공사 도급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 대한 근로자재해보험(공제) 가입비용의 절반을 부담할 경우 공공부문 발주자 부담금을 추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공공부문 발주자 건설종사자 재해보험(공제) 가입비용 부담금 추정: 2027년]

(단위: 억원)

구 분	2027
종합건설업체 가입비용	284
발주자 지원비용(A)	142
전문건설업체 가입비용	253
발주자 지원비용(B)	126
합 계(A+B)	268

자료: 국토교통부 추산자료